#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14

발의연월일: 2020. 11. 17.

발 의 자:임오경·김승원·이상헌

유정주 · 최혜영 · 정청래

박상혁 · 장철민 · 박성준

윤재갑 · 전용기 의원

(11인)

##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과태료를 단계별로 차등하여 제1항은 2,000만원 이하, 제2항은 1,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법 제1항에 따른 다수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제2항의 상한액(1,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법률에서 단계별로 차등하여 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 하여 설정한 경우 부과금액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 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2조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매개 정지를 포함) 처분 위반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

서비스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9조).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상한액을 복수로 구분 명시한 경우는 부과금액도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할 필요
  - 1) 법 제39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0만원 이하, 제2항은 1, 0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나 제39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는 시행령상 과태료의 상한액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2항으로 이동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행위 간 순서를 유지하도록 함.
- 나. 법 제22조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9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할 필요
  - 1) 제39조제1항제12호의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에 신문 등의 기사를 제공·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함.

#### 법률 제 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
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 하거나 공표한 자
- 3.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기사의 제공·매개 정

지를 포함한다)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여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한 자

-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 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과태료) <u>&lt;신 설&gt;</u>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u>한다.</u>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
	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u>
	<u>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u>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
	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
	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
	<u>표한 자</u>
	3.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
	는 지분을 소유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기사의 제공・매
	개 정지를 포함한다)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과 인터넷신문
	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또
	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
	하여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

현 행	개 정 안
	<u>한 자</u>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
	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
	<u>한 자</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②</u>
해당하는 자에게는 <u>2천만원</u> 이	<u>1천만원</u>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1.</u>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	아니한 자
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u>&lt;삭 제&gt;</u>
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	
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	
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	
표한 자	
<u>3</u> . ~ <u>9</u> . (생 략)	<u>2</u> . ∼ <u>8</u> . (현행 제3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u>&lt;신 설&gt;</u>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
	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u>아니한 자</u>

현 행	개 정 안
10.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	<u>&lt;</u> 삭 제>
는 지분을 소유한 자	
11.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	<u>&lt;</u> 삭 제>
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2.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u>&lt;삭 제&gt;</u>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	
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13.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u>&lt;</u> 삭 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	
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	
<u>한 자</u>	
②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lt;삭 제&gt;</u>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